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1.

발 의 자 : 서일준 · 김소희 · 서천호
김은혜 · 성일종 · 이인선
강명구 · 임종득 · 이달희
신성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·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.

그런데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주어지지 않아,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,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4 신설).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4(도시철도운영자의 임직원)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중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은 그 관할 구역의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선로, 역사 및 역 시설에서 발생하는 「경범죄 처벌법」 제3조제1항제18호부터 제21호까지, 제23호, 제3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, 그 외의 직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7조의4(도시철도운영자의 임직원)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중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은 그 관할 구역의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선로, 역사 및 역 시설에서 발생하는 「경범죄 처벌법」 제3조제1항제18호부터 제21호까지, 제23호, 제3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, 그 외의 직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</p>